

	교육과정개발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10. 01.
		최종개정일자	2019. 06. 30.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육과정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이 학문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책임과 권한) ① 교육과정 운영의 총괄부서는 학사지원처로 하고, 주관부서는 창의인성교육혁신센터로 둔다. 임무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9.06.30>

1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안 개발
 2.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
 3. 기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발
- ② 교육과정운영의 관련 부서는 학과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, 검증 및 타당성 확인
 2. 교육과정 개정 관련 학과(전공)단위 “학과별 소위원회” 운영

제4조(교육과정개발위원회구성) ① <삭제 2019.06.30>

- ② 전공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.<개정 2019.06.30>
- ③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.<개정 2019.06.30>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임무) ① 위원회는 학문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며,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교육과정 편성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안을 수립한다.
 1. 경제사회 변화
 2. 학문의 발전과 변화
 3.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
 4.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

제7조(학과별 교육과정 소위원회) ① 학과별 교육과정 소위원회(“이하 학과별 소위원회”라 한다.)는 해당 학과 교수로 구성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안을 기본 안으로 하여 창조적 인재교육과 전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작성한다.<개정 2019.06.30>

- ② 학과별 교육목표 수립 및 개선,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

개발한다.

③학과별 교과목의 학습 성과 검토 분석 등 교육과정 운영보고서를 작성한다.

④학과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반적인 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.

⑤학과별 소위원회는 당해연도 학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, 연구, 검토하여 교육과정안을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한다.

⑥학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회의록 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한다.

제8조(교육과정 확정) 학사지원처에서는 학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육과정 편성표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회회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